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7-04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8누3473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redacted]교회
피고, 항소인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1. 12. 선고 2017구합2547 판결
변론종결	2018. 5. 1.
판결선고	2018. 5. 2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6,041,970원, 지방교육세 345,250원, 농특세 431,560원, 가산세 1,056,270원 합계 7,875,0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7-04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8행 '타당하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예배당 등 종교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득에 관한 취득세가 면제되는 상황이었고,[1] 실제로 이 사건 건물 중 다른 부분은 종교시설로 취득세가 면제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구립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가장 가치가 높고 활용성이 크다고 할 수 있는 지상 1층의 쟁점 부동산을 건축물대장상 어린이집으로 등록한 후 피고에게 이를 무상임대한 다음 피고로부터 이를 다시 위탁받는 절차를 거쳐 쟁점 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되었다(갑6호증, 을5, 7호증).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쟁점 어린이집의 법률상 설치자가 원고가 아닌 피고라는 이유만으로 쟁점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취득세를 면제하지 않는다면, 이는 그 실질의 측면에서도 매우 부당한 결과가 된다]

2. 결론

1)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이하 생략)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7-04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여상훈

판사 견종철

판사 장철익